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민수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3312 |
|----------|-------|

발의연월일 : 2025. 9. 26.

발 의 자 : 한민수 · 송옥주 · 이연희  
임오경 · 박균택 · 박해철  
이해식 · 최혁진 · 박상혁  
김기표 의원(10인)

### 제안이유

최근 방송·미디어 환경이 OTT 확산 등 글로벌 경쟁 환경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국내 방송 시장은 광고매출 등 수익이 감소하고 가입자수 감소가 가시화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특히 유료방송은 글로벌OTT 등 신규 미디어의 시장 잠식에 대응하여 다양한 생존 전략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나, 과거 유료방송이 성장·전성기이던 시기에 국내 시장의 경쟁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현행법은 여전히 유료방송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어 유료방송의 자율적인 사업 운영을 제약하고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유료방송의 위기 타개와 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 일간신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소유 규제와 유료방송 시장 내 가입자수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자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여 유료방송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 촉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지분소유 제한(100분의 49 초과 금지) 규정을 폐지함(제8조제2항 삭제).
-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 수 점유율 규제(3분의 1 초과 금지)를 폐지함(제13조 삭제).
- 다. 외국인이 공익성심사를 통과할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의 주식을 49%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정하고, 공익성심사에 관한 사항은 방송법상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9조, 제9조의2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민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9조의2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2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같은 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

한 공익성심사)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제외한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실시하는 공익성심사에 관하여는 「방송법」 제14조의2,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방송채널사용사업”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으로,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보도를 전문으로 하거나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자”로 본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을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다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같은 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③ (생략)

<신설>

다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9조의2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

<신 설>

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  
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2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에도 같은 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9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  
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제9조제  
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인  
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  
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  
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제외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  
는 경우 실시하는 공익성심사에  
관하여는 「방송법」 제14조의  
2,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  
우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자”로, “방송채널사용사업”  
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  
텐츠사업”으로,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보도를 전문으로 하거나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자”로 본다.

<삭 제>

제13조(시장점유율 제한 등) ①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 사업자를 합산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 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방송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은 제1항에 따른 가입자 수 산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가입자 수의 산정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에 따른 해당 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생략)

제24조(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①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제2항-----  
-----  
-----

② (현행과 같음)